

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

(참 조)

제 목 **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(어린이통학버스 관련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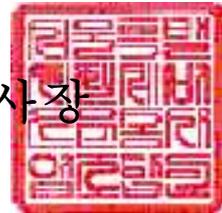
1. 행정안전부령 제211호(2020.11.27.)와 관련입니다.

2.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관련 「도로교통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“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좌석안전띠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을 작성하는 서식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통지서 및 확인증의 서식을 정하는 내용”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(2020.11.27.)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,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불임 : 전자관보 사본 1부.

※ 불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www.tourbus.or.kr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 [끝]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



담 당 박영수 부 장 라영석 실 장 박호동 전무이사 박태환

협조자

시행 서전버조 20-293호 (2020.11.30.) 접수 ()
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(교통회관 11층) / <http://www.tourbus.or.kr>
전화 02-422-0019 전송 02-418-0071 / / 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